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검토 의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이지연 위원(변호사)

2025.04.23

- 카드 단말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상 조항이 분쟁 해결의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말기 사용자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이에 기하여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이 진행될 경우,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존재함을 근거로 단말기 사용자의 위약금지급채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지급청구’ 사건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위약금이 과도함을 이유로 감액된 경우에도 감액비율이 30~50%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단말기 업체에서는 대부분의 재판이 ‘30~50% 비율의 위약금 감액’의 결과로 종결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단말기 업체는 감액비율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적정 금액의 2,3배 액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카드 단말기 업체 종사자들 사이에서 ‘위약금 장사·손해배상 장사’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 2000년도 초부터 단말기 업체의 소위 ‘위약금 장사·손해배상 장사’가 문제되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강력한 제재를 취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관련 민사재판 판례들 역시 ‘위약금 감액’이라는 동일한 판결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말씀하신 구회 회원분의 사안과 같은 경우 계약서상 관련 조항(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불합리를 근거로 업체 측과 위약금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 무엇보다 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각 조항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항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중도해지 시 사용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수정조치요구 등 향후 분쟁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단말기 계약서에 <고객 동의 없는 자동 계약 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객 동의 없는 자동 계약 연장>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각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명한바 있습니다.

<고객 동의 없는 자동 계약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말기 사용자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이 포함되어있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업체가 불이행할 경우, 업체는 약관법 제17조의2조 및 제3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내용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65088189>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